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6)

-ESSD와 기업 경영-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목차

- I. 지속가능한 개발이념과 실현 수단
- II. 지구환경문제와 기업의 당면 과제
 1. 환경문제와 기업
 2. 환경경영의 도입
 3. 환경 및 경영요소의 통합
- III. 환경경영 표준과 유사 프로그램
 1. 환경경영규격의 생성 배경
 2. 국제규격의 종류 및 내용
 3. 다른 환경경영 원칙 및 프로그램
 4. 국내 제도 및 운영 실태
 5. ISO 14001/14004/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비교
- IV. 환경경영 도입에 따른 기본 전제
 1. 환경경영의 기본원리와 도입에 따른 이점
 2. 환경경영의 도입에 따른 실천전략
 3. 성공적인 환경경영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 V. 참고문헌

3.5.6 경영관리상의 실천 강령

1989년부터 CMA의 소위원회 별로 모두 6개 부문에 걸쳐 경영 관리상의 실천 강령을 제정하기 시작. 각 부문마다 실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1) 지역사회에의 통보 및 비상대책(Community Awareness & Emergency Response Code : CAER)

-1989년 11월에 제정

-목적 : 비상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대비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CAER에 의한 사업장의 실천의무 사항>

- * 안전, 보건, 환경문제에 관하여 지역주민 및 종업원과 밀접한 의사소통 유지함.
- * 오염방지활동, 화학약품의 안전성, 안전한 수송/보관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함.
- * 비상사태의 돌발에 대비한 대비책을 수립함.
- *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그러한 대비책을 실제 훈련으로 주지시킴 (주민참여)

2) 공해배출의 방지(Pollution Prevention Code)

-1990년 4월에 제정

-목적 : 환경에 위해를 주는 모든 배출물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억제노력후의 발생물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실시

-Pollution Prevention Code는 법규 준수의 차원이 아닌 오염배출의 근원적 억제 노력을 규정

<사업장의 실천의무 사항>

- 대기, 물, 토양으로의 모든 배출상황을 기록하며 그 영향을 평가함.

- 종업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배출저감 프로그램을 입안함.
- 발생후의 처리방안보다 근원적 발생 억제를 우선적으로 실천함.
- 설비, 공장,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 오염배출억제 및 폐기물억제를 포함시킴.

3) 공정안전(Process Safety Code)

- 1990년 9월에 제정
- 목적 : 화재, 폭발 및 누출사고의 방지를 위한 지침 제공

<사업장의 실천의무 사항>

- 지속적인 공정안전 프로그램의 실시 (성과의 측정, 감사, 시정조치의 집행 등을 포함)
- 설비의 신규건설 또는 개조시에 설계와 가동 개시 전에 안전진단을 의무화.
- 모든 안전관계 기록의 작성과 유지.
- 단순사고가 대형의 안전교육의 일상화.
- 안전면에서의 지식, 교훈, 사례 등을 정부기관, 산업계 및 지역사회에 홍보.

4) 제품의 유통과 배급(Distribution Code)

- 1990년 11월에 제정
- 목적 : 화공약품의 보관, 사용 및 수송에 따른 위험요인의 방지와 처치에 관한 지침 제공

<사업장의 실천의무 사항>

- 화공약품의 유통에 관련된 위험요소의 평가와 그 대처 방안의 수립.
- 화공약품의 유통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기준의 준수.
- 수송업체, 유통업체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훈련시킴.
- 작업자, 수송업체, 유통업체 및 협력회사의 안전준수 상태를 진단.
- 수송업체 선정검사 프로그램의 실시 : 안전적합도,

- 법규준수실적 등을 평가
- 화공약품 유통중의 안전사고를 기록하고 보고함.

5)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Employee Health and Safety Code)

- 1992년 1월에 제정
- 목적 : CMA회원기업의 작업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지침 제공

<사업장의 실천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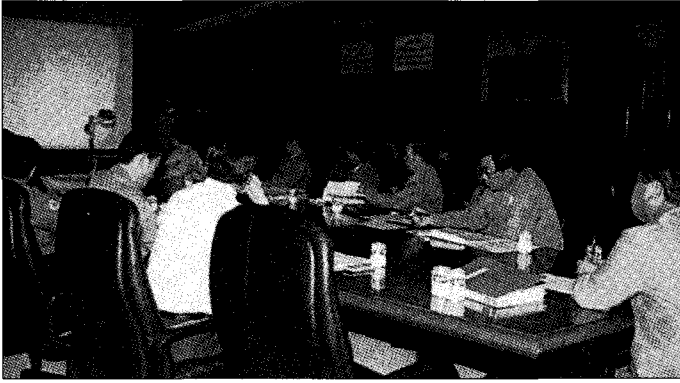
- 직업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진단함.
- 위의 프로그램입안에 종업원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시킴.
- 협력회사의 선정시에 작업보건 및 안전 준수상태를 평가함.
- 보건 및 안전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함.
- 잠재적 보건 / 안전 위험요인을 연구함.
- 안전장비 및 작업안전도를 진단하여 안전도를 증진시킴.
- 모든 작업장내 질병, 부상 및 사고를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함.

6) 제품책임주의 (Product Stewardship Code)

- 1992년 4월에 제정
- 목적 : 화학공업제품의 설계, 생산, 영업, 유통, 사용, 재활용 및 처분에 있어서 보건, 안전 및 환경에 필수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 제공

<사업장의 실천의무 사항>

- 제품책임주의를 회사의 정책으로 수립하고, 이를 조직내에서 실천할 목표를 설정하며, 실행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지원함.
- 기존 및 신규 제품의 안전 / 보건 / 환경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유지함.



- 제품의 개발, 설계 및 개량의 과정에서 보건 / 안전 / 환경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 제품의 취급, 사용, 재활용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훈련시킴.
- 원료공급회사 및 협력회사에 대하여 동일수준의 제품책임주의를 실천하도록 유도함.

3.6. 미국 EPA의 Environmental Leadership Program(ELP)

이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게 혁신적인 감사, 공개, 그리고 이행 방법들을 촉진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EPA는 연방 및 주정부의 보고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국의 단속을 줄이는 것을 의도하였다. 시험프로그램은 기업과 당국이 감사와 자발적인 이행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Criteria를 시험해보기 위해 생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면, ELP를 통해 당국의 감시를 줄이고 이행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이나 당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ELP는 참가자들이 EPA지침에 맞는 그들만의 EMS를 발전시키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EPA는 이니셔티브EPA가 규제받는 대상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ELP 체제하에서는 EPA는 참가자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환경표준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즉 어떠한 실제 혹은 의심되는 위반에 대해서도 EPA 및 주정부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국은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강제 행위없이 이행을 위한 수정기간으로 90일을 부여하며, 참가자들은 2년내에 수행된 환경결과를 EPA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EPA는 위반에 대해 불평을 들으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클린턴 대통령의 새로운 EPA 개혁 프로젝트인 XL프로젝트 - 완벽한 리더쉽 -에 사용될 수 있다.

ISO14000시리즈는 ELP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에 구조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ELP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난 뒤 인증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2개의 참가자들이 있다.

Arizona Public Service, Deer Valley Facility, Phoenix, Arizona; Ciba-Geigy Corporation, St. Gabriel, Louisiana; Duke Power Riverbend Steam Station, Mt. Holly, North Carolina; the Gillette Company(in the manufacturing centers); the John Roberts Company, Minneapolis, Minnesota; McClellan Air Force Base, Sacramento, California; Motorola Incorporated, Oak Hill Facility, Austin Texas; Ocean State Power, Burrillville, Rhode Island; Puget Sound Naval Shipyard, Bremerton, Washington; Salfe River Project, Phoenix Arizona; Simpson Tacoma Kraft Company, Tacoma, Washington; and WMX Technologies Incorporation, Arlington, Oregon.

3.7. EPA의 Common Sense Initiative (이전에 Green Program으로 알려짐)

이 발의는 1992년 11월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법적의무의 이행과 허가에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을 갖고, 결론 도출과 “명령·통제” 체계의 개혁을 위한 회의 형태이다. 이것의 목적은 특정 산업분야의 모든 매체에 걸쳐서 환경규제를 관례화하여 환경 경영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EPA에 의하면, 모든 영향받는 단체들을 현재의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로 이끄는 “환경보호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조사”이다. 자동차산업, 인쇄, 컴퓨터 및 전자, 석유정제, 금속제련, 철강산업 6개의 산업이 시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산업의 부속위원회와 연방 및 주정부, 환경단체, 그리고 노동자 조합으로부터의 대표자들도 작업반에 포함된다.

이 팀들은 새로운 법규들을 검토하고, 환경기술혁신의 추진과 같은 방법으로 증가하는 오염방지에 대한 보고서의 단순화를 통하여 산업이 적응하기 쉽도록 한다.

ISO 14000시리즈의 발의하에서 모든 매체를 통합시켜 허가로 발전시키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접근을 통한 오염방지에 접근하도록 기업들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3.8.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ASM)의 환경경영체제

ASTM은 조직의 미국이 법적 요구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감사 표준인 환경이행감사의 실시(PS11)와 조직의 환경경영체제의 연구와 평가의 지침(PS12)을 개발하였다. PS11의 목적은 내외부 감사의 최소 요구사항 문서화이다. 이는 감사와 관련된 법적이슈를 규명하고, 감사자 자격에 최소한의 기준을 환경규제감사와 관련한 인정된 과정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부록에 법적인용과 특정규제기구에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PS12는 환경경영체제의 연구와 평가를 위한 지침

을 정의한 것으로 PS11과 같이 주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EPA의 환경 리더쉽프로그램과 같은 미국의 규제와 프로그램에 기초한다.

PS12는 산업이 적절한 장소에 EMS를 갖추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 ISO 14000에서와 다르게 EMS가 정의된다. 「즉, 환경경영체제는 “조직의 이사회, 경영 및 다른 개인정책, 과정, 활동에 의해 영향받는 방침, 과정, 그리고 활동을 말하며,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계획된다.”」고 정의되며, ISO 14000은 EMS를 “조직적 구조, 계획활동, 책임, 실시, 상품, 공정, 개발자원, 수행, 달성, 검토, 그리고 환경방침의 유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경영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PS11, PS12와 달리 ISO 14000은 특정국가보다는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다. ISO 14001은 규제 준수 감사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에 의한 EMS의 유지 및 발전에 사용된다. 개발중에 있는 다른 ASTM 환경이행 표준은 다음과 같다.

Practice for Voluntary Cleanups at contaminated Sites; Guide for Environmental Laboratory Results Export Format;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Corporate Fiduciaries in Environmental Matters; Guide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Health of a Residence; Guide of Practice for Environmental Audits for Residential Real Estate; and Guide for Remediation Project Management.

3.9. 국제안전관리코드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해양사고의 약 85%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운영을 위한 경영전략이 필수적이다. 국제안전관리코드(ISM)라고 불리는 안전 운영과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코드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의 안전 운행을 위한 선적과 관련 경영을 취급하는 문서이다. ISM코드는 소유주로부터 선박 운영 책임을 넘겨 받은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함께 안전과 오염방지와 관련된 경영시스템에 초점을 맞춘다.

ISM코드는 IMO에 의해 1993년 11월 4일에 결의 A.741(18)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여객선, 탱크선, 가스운반선, 커다란 운반선 등 1998년 6월 1일 이전에 이들 국가 기초시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ISM코드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증은 자발적이다. 그러나 ISM코드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으로 채택되었고, 1998년 6월 1일부터 특정 선박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ISM코드는 해양산업의 안전경영 기술의 연속적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선박에 적용 가능하다. 회사내 다양한 책임을 갖는 담당자 지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영과정이 정부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문서화되고, 적합하게 맞추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그 결과가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이다.

좋은 안전경영의 초석은 최고 경영진으로부터의 공약이다. 안전과 오염방지의 문제에서 보면,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레벨에서의 개인의 공약, 경쟁, 태도, 그리고 동기부여이다. ISM코드는 선박이 적용 표준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영과 책임감 있는 개인을 요구한다. 제3자에 의해 ISM코드 규격에의 준수가 확인되었을 때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이행문서(Document of Compliance, DOC)가 발행된다.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DOC를 갖는 선박들은 적용가능한 ISM코드 규격을 만족할 때 안전경영 인증이 발행된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ISM코드의 요소를 반영한다. 기업의 개인 매뉴얼, 긴급사태 대응계획, 훈련계획이 이미 ISM코드 규격과 일관하여 경영을 하고 있다. 최소의 노력 이외에 국제 항구로서 선박 훈련과 각국의 규격 준수, 선박내에 적합한 인증과 문서의 구비 등이 요구된다.

SOLAS Chapter IX에 명시된 이행 날짜가 발표되기 까지 인증은 자발적이다. 미국의 해양국(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은 ISM코드 요구사항에 대한 선적 공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현재, ABS는 기업과 선박에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3.10. 국제선박운영협회코드

(International Ship Management Association Code, IS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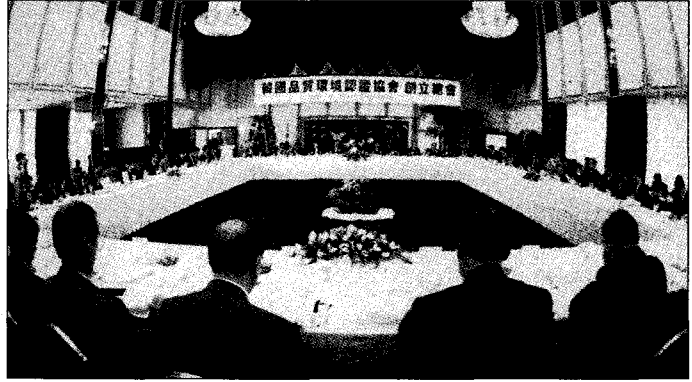
ISMA는 선박 운영에 있어 최고 수준의 표준을 달성하고 유지할 필요에 따라서 1991년 4월 제정되어 현재 30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6개로 확정될 3개의 분류단체가 ISMA회원의 품질보증경영을 검색하고, 평가한다. ISMA의 필수적 부분은 선박경영표준코드의 채택인데,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향상된다. 원래 이 코드는 독립적 선박경영기업에 의도되었지만, 자기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들에 의해 채택된다. 모든 선박을 포함하는 국제안전관리코드에의 규제요구사항과는 달리, ISMA는 자발적이고, 선박경영의 사업에 관련된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ISMA코드는 미래 지향적이고, 선박경영의 모든 분야에 잠재적 영향을 갖는다.

코드는 품질 보증된 선박경영과 운영을 요구하며 인근 해안과 선박경영에 적용되는 목적과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제와 제어가 필수적인 지역을 규명한다. 중요한 목적은 품질 보증된 선박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선박을 운영하고, 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환경을 보호한다.”가 포함된다. 이 코드에는 개정되어야 할 규격들이 있으며 분류단체와 ISMA코드위원회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

4. 국내 제도 및 운영 실태

국내에서는 ISO의 정회원인 공업진흥청이 환경표준

안전과 오염방지의 문제에서 보면,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레벨에서의 개인의 공약, 경연, 태도, 그리고 동기부여이다. ISM코드는 선박의 적용 표준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영과 책임감 있는 개인을 요구한다.



화가 진행되어온 초기부터 TC207의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SC)에 관계관을 파견시키면서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전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사무국이 되어 국제환경경영표준화 민간대책반이 발족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기업간에 협조 미흡으로 체계적인 대응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본격적인 대응은 공업진흥청 주도로 1995년부터 ISO 시범인증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라 할 것이며, 이는 1996년에도 계속 실시되고 있고, 특히 환경경영체제를 수용한 환경인증제도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198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환경관리 모범업소지정제도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로 전환한 예규를 1995년 마련하여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995년 12월 동 제도의 실시근거를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반영한 바 있다.

4.1. 환경경영시범인증제도의 도입실시

공업진흥청은 ISO 14001에 환경경영규격이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환경인증제도가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95년 1월 환경경영시범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간의 시범인증실시('95.1~'95.12)결과, 한국품질환경인

증센터 등 5개기관을 후보인증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를 후보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심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심사원보 232명을 양성하였으며, 39업체(업체당 평균 20일지도)에 대하여 환경경영시범업체 지도를 하고 삼성전자 등 37업체에 대하여는 환경경영시범인증서를 교부하였다. 1996년에는 국립기술품질원이 공고 제1996-130호(환경경영시범인증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시범인증계획에 따라 환경경영시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범인증신청을 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며, 시범인증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 시범인증을 받게 된다.

현재 1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중 시범인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에 의해 배출된 심사원보와 시범인증기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95. 12. 29), 동시행령('96. 7. 13.), 동시행규칙('96. 8. 13) 및 운영요령('96. 9. 30)이 마련되므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 정식 인증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